취득성적 포기 안내

1. 관련 근거

가. 학칙 제43조(취득성적의 포기)

나. 학사운영규정 제103조(취득성적의 포기)

2. 취득성적의 포기

취득성적 포기는 성적이 **C+이하인 성적을 포기**할 수 있는 제도로서,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초과예정인 경우

3. 취득성적 포기 신청

취득성적 포기신청은 재학생에 한하여 이수 일곱째 학기부터 6학점 이내로 매 학기 초에 할 수 있습니다. 졸업학기에는 성적확인 후 10일 이내에 6학점 이내로 추가 포기신청 할 수 있음.

이수학기	시기	신청학점	비고
7학기	학기말	**6학점 이내**	1회 신청시 6학점 이내에서 가능하며 졸업까지 총 12학점 이내에서 가능 함.
8학기	학기초	**6학점 이내**	
	성적확인후 10일 이내	**6학점 이내**	

4. 신청기간 : 2020. 4. 13.(월) ~ 4. 20.(월) 17:00

5. 신청대상자 : **4학년 (7학기 이수자 이상) 재학생**

6. 신청방법

가. 취득한 성적을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**2020. 4. 20.(월) 17:00**까지 대학/대학원 통합행정팀으로 제출하여야 함.

나. 홈페이지 학사공지 취득성적 포기원 및 서약서 출력 → 작성 → 성적증명서 첨부 → 학과장 면담 및 날인 → 대학/대학원 통합행정팀 제출

다. 대학/대학원에서는 제출된 서류 결재 후 교무처 학사팀 송부

7. 취득성적 포기시 주의사항

가. 졸업학점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**교필** 및 **전필과목**은 **제외됨**.

단, 대체나 이수구분 변동으로 인해 포기해도 지장이 없을 경우에만 비고란에 "대체 또는 변동"표시하여 취소신청 가능합니다.

나. **취득성적을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은 두 번 다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.**

다. 취득성적을 포기하면 성적이 좋아도 **학기우등 및 졸업우등 대상에서 제외** 됩니다.

8. 행정사항

가. 대학/대학원 통합행정팀은 2020. 4. 20.(월) 17:00까지 접수

나. 대학/대학원 통합행정팀은 제출된 서류를 점검 후 2020. 4. 21.(화)까지 교무처 학사팀으로 전자공문 송부